

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○ 부서명 : 자원순환과

○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구분	조치사항			
	총건수	시정	개선	권고
합 계	8	3	5	0
조치완료	3	1	2	0
조 치 중	5	2	3	0
장기검토	0	0	0	0
조치불가	0	0	0	0

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
자 원 순 환 과	시 정	158.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운영 철저 ○ 주민지원기금 채원 조성 등 조례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숙지하여 조례에 규정한 대로 시행하기 바람.	○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 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%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 예정임.
	개 선	159. 환경관리원 운영·관리 철저 ○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청소구역은 늘어났으나 환경관리원 정원은 늘지 않았으므로 하루 청소량 등 관련 통계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 환경관리원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.	○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, 공공용 봉투 사용량 파악 등 통계데이터 활용하여 환경관리원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
자 원 순 환 과	개 선	160.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대책 강구 ○ 환경자원화시설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화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	○ 매립장 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예비비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으며, 관리인력 및 장비(굴착기) 보강, 스프링클러 설치, 공사장폐기물(인화성) 분리 보관 등 종합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중임.
	시 정	161.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○ 환경관리원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은 리모델링하여 추진하고 쓰레기봉투 창고 판매소는 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관리하기 바람	○ 리모델링에 대하여 환경관리원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하고, 사무실, 회의실, 편의시설 등에 대한 필요 면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 확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겠음. ○ 종량제 봉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면적을 산출하여, 필요시 리모델링이나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, 기존의 배송과 관리시스템에 대한 주민 불편을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개선토록 하겠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
자 원 순 환 과	개 선	162. 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 ○ 폐기물 처리업체의 반복적인 행정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바람.	○ 소통공감센터 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하겠음. ○ 2023년 폐기물사업장 지도·점검계획에 따른 사업장 수시·정기점검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위반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며, ○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도 통합지도·점검규정에 따른 사업장 등급 조정할 예정임. ※ 중점관리사업장 : 4회/년
	개 선	163. 구포복지관 안전 보강 조속히 추진 ○ 구포복지관 활용에 대해 2020년부터 협의 하였고 안전진단 결과 기능보강이 필요하 다고 나왔으나 사업속도가 더디므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.	○ 주민 의견수렴, 타부서 수요조사 후 필요부서에 이관 및 용도 변경하여 주민 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방안 모색 중이며, ○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안전진단 보강 공사 시행 예정임. ※ 설계비 추경예산 확보(20백만원)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
자 원 순 환 과	개 선	164.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개선 ○ 주민이 협의체에 포함이 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으므로 협의체에 주민을 포함해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.	○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의회 의원(4명), 시의회 추천 전문가(2명)로 구성·운영하고 있으며, ○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대표 추가할 수 있음.
	시 정	165.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사업 공개 업무 철저 ○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에 의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맞게 업무를 철저히 할 것.	○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공개 완료(2023. 8. 14.)